



인도네시아 Tax Info 2022 년 4 월호

핀테크의 소득세 및 부가세 처리에 관한 규정 발표

세법개정(Undang-Undang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UU HPP)) ([Tax Info October 2021](#) 및 [Tax Alert November 2021](#) 참조)에 관한 2021 년 법률 No. 7 에 따라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MoF)은 거래에 직접 관여하거나 연관된 국내 또는 외국 당사자를 지정하여 해당 거래와 관련된 지불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음. 2022 년 3 월 30 일에 재무부 장관은 peer-to-peer 대출 (P2P 대출) 활동의 원천징수세 (WHT) 처리 및 핀테크 산업의 부가세 처리를 규제하기 위해 규정 No. 69/PMK.03/2022 를 발표했음. PMK-69 는 2022 년 5 월 1 일부터 발효되며 핀테크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는 이 규정을 검토하여 필요한 절차를 실행하는 데 요구되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In this issue:

1. [Regulations governing income tax and VAT treatments of financial technology issued](#)
2. [Regulation governing VAT and income tax treatment of cryptoasset trading issued](#)
3. [Implemented VAT on commission fee for insurance agency and brokerage](#)

Customs Focus:

4. [New stipulation of Goods Classification System and Imposition of Import Duty Tariffs on imported goods](#)

P2P 대출에 대한 소득세 처리

P2P 대출은 대금업자와 차용인을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이나 기업에 돈을 대여해주는 방식이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당사자를 포함함.

- 대금업자 (Lender): P2P 대출 플랫폼을 통해 차용인에게 돈을 대여해주는 당사자. 대금업자는 일반적으로 차용인으로부터 이자의 형태로 보상을 받음;
- 차용인 (Borrower): 대금업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개인 또는 기업. 차용인은 일반적으로 P2P 대출 플랫폼을 통해 대금업자에 이자를 지불함; 및
- P2P 대출 플랫폼 회사: P2P 대출 서비스를 제공, 관리 및 운영하는 인도네시아 법인. P2P 대출 플랫폼 회사는 일반적으로 P2P 대출 활동을 준비하는 서비스에 대해 대금업자 및/또는 차용인으로부터 "플랫폼 수수료"를 받음.

PMK-69 는 아래 표에 요약된 바와 같이 P2P 대출 활동 에 대한 원천세 처리 지침을 제공함.

소득 수취인	소득 유형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자
대출자	이자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금업자가 인도네시아 납세자일 경우 원천징수세법 제 23 조의 15%; 또는 • 대금업자가 인도네시아 납세자가 아닌 경우 원천징수세법 제 26 조의 20%. 세율은 관련 조세조약에 의거 감면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2P 대출 플랫폼 회사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Otoritas Jasa Keuangan(OJK))에 등록된 경우 P2P 대출 플랫폼 회사는 소득세법 제 23 조 또는 제 26 조에 따라 원천징수, 정산 및 신고해야 함. 회사는 한 과세 기간에 동일 대금업자에게 지급된 모든 이자를 포괄하는 단일 원천징수세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음; 또는 • P2P 대출 플랫폼 회사가 OJK 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차용인은 원천징수세법 제 23 조 또는 제 26 조에 따라 원천징수, 정산 및 신고해야 함.
P2P 대출 플랫폼 회사	차용인으로부터 받은 이자와 대금업자에게 이전된 이자의 차액을 포함한 플랫폼 수수료("스프레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2P 대출 플랫폼 회사가 OJK 에 등록된 경우 플랫폼 수수료는 원천징수가 면제되며 P2P 대출 플랫폼 회사는 플랫폼 수수료를 연간 소득세 신고서에 소득으로 신고해야 함; 또는 • P2P 대출 플랫폼 회사가 OJK 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대금업자 및/또는 차용인은 플랫폼 수수료의 2% 비율로 소득세법 제 23 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함. 	

PMK-69 는 차용인으로부터 받은 이자가 P2P 대출 플랫폼 회사의 소득이 아니며 이자가 대금업자에게 이전될 때 P2P 대출 플랫폼 회사의 비용이 아님을 확실히 하고 있으며 따라서 해당 이자는 P2P 대출 플랫폼 회사의 법인세(CIT) 계산시 손금으로 처리되지 않음.

핀테크 산업에 대한 부가세 처리

PMK-69 는 다음 핀테크 서비스의 부가세 처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

- 결제중계시스템;
- 투자 결제 서비스;
- 클라우드펀딩 서비스;
- P2P 대출 서비스;
- 투자 관리 서비스;
- 온라인 보험 상품 제공 관련 서비스;
- 시장 지원 서비스; 및
- 금융 디지털 통합 지원 서비스 및 기타 금융 서비스.

부가세 납세사업자(PKP)로 등록된 위에 언급된 서비스 제공자는 표준 세율(2022 년 4 월 1 일부터 11%, 2025 년 1 월 1 일부터 이 비율이 시행되면 12%로 인상됨)로 부가세를 징수, 정산 및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수수료, 커미션 또는 판매자 할인율과 같은 모든 이름이나 형태의 보상을 포함하는 부가세 과세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E-money 발행사가 요구하는 관리비 및 카드 가격(결제중계시스템의 경우) 및 P2P 대출 서비스에 대한 스프레드와 같은 특정 서비스에 대한 일부 유형의 보상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부과됨. 결제중계시스템 제공업체의 특정 자금 이체 서비스, 보험 회사가 수행하는 온라인 보험 서비스, 클라우드 펀딩 목적으로 투자자가 수행하는 자금 배치 또는 금융 서비스와 같은 유형의 보상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PMK-69 는 각 서비스 범주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되거나 면제되는 보상 유형의 자세한 목록을 제공함.

또한 PMK-69 는 아래의 상품과 관련된 거래가 비과세임을 확증함.

- 보너스, 추가 지불, 보상 및 로열티 포인트를 포함한 e-money 또는 e-wallet 형태의 머니; 및
- 클라우드 펀딩 서비스 및 투자 관리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특정 유가증권.

Money in the form of e-money or e-wallets and certain securities are nontaxable goods under PMK-69.

암호자산 거래의 부가세 및 소득세 처리 관련 규정 발표

개요

2022 년 3 월 30 일 재무부 장관은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 관련 규정 No. 68/PMK.03/2022(PMK-68)를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2 년 5 월 1 일부터 유효하며 관련 용어 및 암호자산 거래 유형에 대한 정의; 부가세 확인, 소득세 제 22 조 (원천징수세(WHT) 형식) 및 거래 유형별 소득세 처리; 외국 암호자산 교환 거래소의 지정 절차; 교환 거래소의 의무 사항을 규정함.

정의

PMK-68 은 아래 사항을 정의 함.

- **암호자산:** 암호화, P2P 네트워크 및 새로운 단위 생성을 규제하는 분산 원장, 거래확인 및 다른 당사자의 간섭이 없는 안전한 거래 등 디지털 자산 형태의 무형 상품;
- **암호자산 판매자:** 암호자산을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개인 또는 회사;
- **암호자산 구매자:** 암호자산을 수령하거나 수령한 것으로 간주되며 암호자산 대금을 지불하거나 지불한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 또는 회사;
- **암호자산의 실물 거래자:** 자체적으로 암호자산 거래를 수행하거나 암호 자산 판매자 또는 구매자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선물상품을 규제하는 관련 정부 기관의 승인을 받은 당사자;
- **암호자산 마이너:** 암호자산 거래를 검증하여 마이닝풀에서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암호자산 형태의 수수료를 받는 개인 또는 회사; 또한
- **전자 시스템을 통한 거래 사업자(PPMSE 또는 교환 거래소):** 암호자산의 실물 거래자를 포함하여 암호자산 거래에 사용되는 전자 통신 시스템을 제공하는 당사자.

암호자산 거래 유형

PMK-68 은 다음 암호자산 거래에 중점을 둠.

- 법정화폐(즉, 전통적인 국가 발행 통화)를 사용한 지불, 다양한 유형의 암호자산 교환, 특정 상품 및/또는 서비스에 대한 암호자산 교환을 포함하여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암호자산 공급;
- 암호자산 거래, 암호자산 스왑 및 암호자산 e-wallet(예금, 출금, 이체 및 저금 서비스)을 포함 암호자산 교환 거래소가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 및
- 암호자산 마이너가 수령한 관리 수수료 또는 거래 확인 서비스.

암호자산 거래 과세

다양한 유형의 암호자산 거래자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 처리 요약관련 아래 표 참조:

암호자산 거래자	부가세	최종 원천징수세 제 22 조	소득세	비고
납세자인 거래자	해당 없음	0.1% 또는 0.2%*	해당 없음	원천징수세 제 22 조는 교환 거래소가 징수함
비거주 납세자인 거래자	해당 없음	0.1% 또는 0.2%* 또는 관련 조세 조약에 따라 면제	해당 없음	비거주 판매자가 조세 조약 국가의 거주자 증명서를 교환자에 제공할 수 있는 경우 교환 거래소는 원천징수 제 22 조를 징수할 필요가 없음
구매자	0.11% 또는 0.22%*	해당 없음	해당 없음	부가세는 교환 거래소가 징수함
교환 거래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적인 거래 	0.11% 또는 0.22%*	0.1% 또는 0.2%*		교환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암호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에 관련된 다른 교환거래소는 0.11% 또는 0.22%의 부가세를 징수하거나 0.1% 또는 0.2%의 원천징수 제 22 조를 징수함 교환 거래소는 서비스 수입에 대해 법인세 표준 세율 22% 및 부가세 11% 부과됨. (e-wallet 관련 거래비용 또는 수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환 서비스 	11%		22%	
마이너	1.1%	0.1%	해당 없음	부가세는 사용자로부터 징수되며 원천징수 제 22 조는 마이너가 자가 징수 지불함. 마이닝 서비스 수익에는 거래 검증 수수료 또는 관리비 또는 수령한 암호자산이 포함됨. (Block Rewards)

암호자산 거래자	부가세	최종 원천징수세 제 22 조	소득세	비고
----------	-----	-----------------	-----	----

**주의*

- 교환 거래소가 암호자산의 실물 거래자가 아닌 경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됨 (즉, 관련 정부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 거래 가치는 (i) 법정 화폐를 사용할 때 부가세 및 사치품 판매세를 제외하여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 또는 (ii) 다른 암호자산과 교환된 각 암호 자산의 가치, 또는 (iii) 비암호자산(상품 또는 서비스)과 교환된 암호자산의 가치.
- IDR 이외의 통화로 된 법정 화폐를 사용하여 수행된 모든 거래 가치는 부가세 징수 시 적용되는 재무부 지정환율을 사용하여 환산해야 함. 다른 암호자산을 사용하여 수행된 거래의 가치는 암호자산 선물 거래소에서 설정한 가치 또는 일관되게 적용되는 거래소 시스템의 가치를 기반으로 IDR 로 변환됩니다.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의 외국환거래소 지정

인도네시아 과세당국은 외국환 거래소를 부가세 및 원천징수세 제 22 조 징수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외국 부가세 징수자는 자동으로 원천징수 제 22 조 징수자로 임명됩니다. 세무서는 암호자산 거래에 대한 부가세 및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지정된 외국환 거래소에 과태료를 부과함.

거래소가 준비해야 할 서류 및 세금 정산

교환 거래소는 아래 정보를 포함하는 부가세 세금계산서 및 소득세 원천징수 통합 원천징수 증명서를 준비해야 함:

- 교환 거래소명 및 납세자번호(NPWP);
- 암호자산 판매자 및/또는 구매자가 인도네시아 납세자 또는 고정 사업장인 경우 세금이 징수된 당사자의 성명 및 NPWP 또는 주민등록번호(NIK);
- 암호자산 판매자 및/또는 구매자가 해외 납세자인 경우 세금이 징수된 당사자의 성명;
- 거래 번호;
- 과세 기준;
- 징수된 부가세 및 소득세율 및 금액; 또한
- 통합 원천징수 증명서 신고현황.

부가세 및 제 22 조 소득세는 납세증명서로 익월 15 일까지 정산하고 부가세 신고는 익월 20 일까지 신고하여야 함. 교환 거래소는 부가세 징수자(SPT Masa PPN 1107 PUT)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가세신고를 해야 함.

보험 회사 및 중개업 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시행령

2022 년 4 월 1 일 재무부 장관은 에이전트와 중개인이 수령하는 보험 수수료에 대해 보험 회사를 부가세 징수자로 지정하는 규정 No. 67/PMK.03/2022(PMK-67)를 발표했음.

Under PMK-67, the insurance company is appointed as VAT collector on commission paid to insurance agents and brokers.

PMK-67 에 의거 부가세 준수 의무가 보험 회사에 부여됨으로 인해 에이전트와 중개인은 더 이상 부가세를 처리할 수 없음. 따라서 신규 규정에 의거 에이전트 및 중개인은 매입부가세를 공제할 수 없음.

PMK-67 은 개별 에이전트와 중개인이 NPWP 및 (자동) PKP 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보험 대리인과 중개인이 받는 수수료에 대해 2022 년 4 월 1 일부터 부가세가 각각 1.1% 및 2.2% 부과됨. 부가세 과표 금액은 총 커미션 금액기준임. 보험 대리인의 수수료에는 다운라인 수수료도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보험대리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거나 보험중개사가 보험료를 수령할 때 보험회사에서 징수해야 합니다.

보험 대리인 및 중개인은 다음과 같은 부가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는 특정 문서를 사용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함.

- 보험회사에서 발행한 수수료 지급 증명서인 거래명세표는 보험 회사의 부가세 세금계산서로 간주됨; 및
- 보험중개사가 발행한 인보이스는 부가세 세금 계산서로 간주됨.

문서가 부가세 세금계산서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최소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함.

- 대리인 또는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PKP 의 이름 및 NPWP;
- PKP 가 발행한 문서의 일련 번호 및 날짜;
- PKP 가 수령한 수수료 또는 요금 금액; 또한
- 징수된 부가세 금액.

보험회사는 부가세 징수자로서 1 개월 이내에 보험대리인 및 중개인으로부터 징수한 부가세 전액에 대해 단일 납세증명서로 부가세를 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보험 회사는 SPT Masa PPN 1107 PUT 을 사용해야 하며 부가세 징수에 착오가 있어 초과납부가 발생한 경우 부가세 이월 또는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관세 포커스

상품분류제도 신설 및 수입품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

2017 HS(Harmonized System) 및 2017 AHTN(ASEAN Harmonized Tariff Nomenclature)의 상품 분류 시스템이 5년 주기 업데이트에 따라 2022 HS 및 2022 AHTN 버전(2022 업데이트 버전)으로 업데이트되었음. 재무부 장관은 2022년 업데이트된 버전을 통해 신규 상품 분류 시스템 및 수입 상품에 대한 수입 관세 부과를 규정하기 위해 재무부 장관령 No. 26/PMK.010/2022(MoF-26)를 발표하고 재무부 장관령 No. 06/PMK.010/2017을 취소함.

MoF-26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상품 분류 시스템의 구조 및 수입 관세 부과에 관한 2022년 인도네시아 관세표(Indonesian Customs Tariff Book)후속 업데이트

HS 및 AHTN 2022 업데이트된 버전은 2022 인도네시아 관세표(Buku Tarif Kepabeanan Indonesia (BTKI))에 장, 호 및 소호를 추가했음. BTKI는 5년마다 업데이트되는 AHTN의 인도네시아어 번역본임. 2017 BTKI 버전은 2022년에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됨.

과목	2017 BTKI (MoF-06)	2022 BTKI (MoF-26)
총 섹션	21	21
총 장	98	99
총 호	1,222	1,288
총 소호	5,387	5,612
AHTN 총 소호	10,813	11,414
국정세율 총 호	18 (제 98 장) 5 (제 99 장)	133 (제 98 장) 5 (제 99 장)

2022 AHTN의 추가 소호는 2017 AHTN에서 이전에 규정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 산업 및 무역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초점 영역을 강조하고 있으며 아래 항목으로 구성됨:

- 바틱 및 섬유 제품;
- 팜원유;
- 농산물;
- 어류 및 수산물;

MoF-26 provides additions and changes to the structure of Goods Classification System and Imposition of Import Duty Tariffs in the 2022 BTKI to give incentive for the development of shipbuilding industry, with 0% import duty imposition.

- 인공호흡기 또는 환풍기;
- 병상 및 일부 의료 장비;
- 전기 자동차 산업 발전과 관련된 제품; 및
- 자동차, 전기 자전거 및 이와 유사한 제품.

2022 년 BTKI 의 제 98 장 업데이트

특히, 운송 장비 산업에 대한 특별 조항에 관한 2022 BTKI 의 98 장이 재구성되었습니다. 98.04 에서 98.11 까지의 추가 제목이 있으며 아래 표와 같이 다른 장에서 98 장으로 선박 부품의 재분류를 나타냅니다.

세번	상품 설명
98.04	72 장에서 이전된 선박 부품
98.05	73 장에서 이전된 선박 부품
98.06	74 장에서 이전된 선박 부품
98.07	76 장에서 이전된 선박 부품
98.08	84 장에서 이전된 선박 부품
98.09	85 장에서 이전된 선박 부품
98.10	90 장에서 이전된 선박 부품
98.11	다른 장에서 이전된 선박 부품

MoF-26 은 관세 신고 문서에 등록 번호와 MoF-26 이 발효되는 날짜, 즉 2022 년 4 월 1 일 이후의 수입 상품에 적용됨.

Contact Persons

Questions concerning any of the subjects or issues contained in this newsletter should be directed to your usual contact in our firm, or any of the following individuals:

Business Tax

Melisa Himawan

Tax & Legal Leader

mehimawan@deloitte.com

Business Tax, M&A and Tax Management Consulting

John Lauwrenz

jlauwrenz@deloitte.com

Transfer Pricing

Roy David Kiantiong

rkiantiong@deloitte.com

Business Tax and International Tax

Cindy Sukiman

csukiman@deloitte.com

Business Tax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Ratna Lie

ratnalie@deloitte.com

Transfer Pricing

Balim

bbalim@deloitte.com

Business Tax

Dionisius Damijanto

ddamijanto@deloitte.com

Business Tax, Business Process Solutions and Gi3

Roy Sidharta Tedja

roytedja@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hivaji Das

shivdas@deloitte.com

Business Tax

Heru Supriyanto

hsupriyanto@deloitte.com

Business Tax, Indirect Tax and Global Trade Advisory (Customs)

Turmanto

tturmanto@deloitte.com

Transfer Pricing

Sandra Suhenda

ssuhenda@deloitte.com

Business Tax

Muslimin Damanhuri

mdamanhuri@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and Business Process Solutions

Irene Atmawijaya

iatmawijaya@deloitte.com

Global Employer Services

Sri Juliarti Hariani

shariani@deloitte.com

Business Tax

Reggy Widodo

rwidodo@deloitte.com

Deloitte Touche Solutions

The Plaza Office Tower, 32nd Floor

Jl. M.H. Thamrin Kav 28-30

Jakarta 10350, Indonesia

Tel: +62 21 5081 8000

Fax: +62 21 2992 8303

Email: iddttl@deloitte.com

www.deloitte.com/id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About Deloitte Indonesia

In Indonesia, services are provided by Deloitte Touche Solutions.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